

第49回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 本會議 會議錄

第2號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5年7月28日(金) 11時 03分 開議

議事日程(제2차 本會議)

1. 서울特別市鍾路區道路占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2. 서울特別市鍾路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3. 서울特別市鍾路區稅入徵收褒賞金支給條例改正條例(案)
4. 서울特別市鍾路區住民登錄事務의 洞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5. 서울特別市鍾路區戶籍過怠料賦課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6.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7.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決算檢查委員選任·運營및 實費辨償條例中改正條例(案)
8.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議員의 日費와 旅費의 支給에 관한條例改正條例(案)

附議된 案件

1. 서울特別市鍾路區道路占用料徵收條例中正定條例(案)
(鍾路區廳長 提出)1面
2. 서울特別市鍾路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鍾路區廳長 提出)3面
3. 서울特別市鍾路區稅入徵收褒賞金支給條例改正條例(案)
(鍾路區廳長 提出)3面
4. 서울特別市鍾路區住民登錄事務의 洞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鍾路區廳長 提出)3面
5. 서울特別市鍾路區戶籍過怠料賦課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鍾路區廳長 提出)3面
6.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丁昌熙議員 外 4人 發議)8面
7.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決算檢查委員選任·運營및 實費辨償條例中改正條例(案)
(安哲柱議員 外 4人 發議)8面
8.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議員의 日費와 旅費의 支給에 관한條例改正條例(案)
(朴鍾植議員 外 4人 發議)8面

(11時03分 開議)

○議長 金憲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在籍議員 21名 중 出席議員 16名으로 成員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받고 안건별로 심사하겠습니다.

1. 서울特別市鍾路區道路占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鍾路區廳長 提出)

(11時04分)

○議長 金憲中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로 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都市建設委員會 李炯述 委員長! 심사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委員會 委員長 李炯述 都市建設委員會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都市建設委員會 委員長 李炯述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2대 의정활동의 첫번째 열린 위원회에서 진지하고, 심도있게 처리하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서울특별시중로 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인 도로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일부 점용요율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진입로 점용료 산정요율을 토지가격의 0.025%로 개정하고, 정부기구 명칭변경에 따른 “건설부”를 “건설교통부”로 개정하는 등 많은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중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95. 7. 27
서울특별시중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1. 審査經過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1995년 7월 4일
중로구청장

나. 회부일자: 1995년 7월 18일

다. 상정일자: 제49회 중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1995년 7월 26일)
상정·의결

2. 提案說明의 要指

(제안설명자: 건설국장 오종석)

가. 제안이유

○ 도로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382호)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일부 점

용료율을 조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건설부령”을 “건설교통부령”으로, “건설부”를 “건설교통부”로 개정함.

○ 점용료산정기준표 중 요율 등 조정

－ 진입로 점용료율 변경: 0.02% → 0.025%

－ 공사용시설물에 어스앙카: 0.02%

○ 비고란에 6의2를 신설

－ 관로를 병행·중첩하여 설치한 경우 관다발의 외접 직사각형과 같은 면적의 원의 직경을 적용하여 점용료 산정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指

(보고자: 전문위원 윤주채)

○ 1994년 9월 16일자 도로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382호)의 개정에 따라

○ 서울특별시중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6조제1항제1호, 동조제1항제2호, 동조제2항제2호, 동조제3항제1호 및 제8조제1항 중 건설부를 건설교통부로 개정하는 것은 정부 기구 명칭 변경에 따른 당연한 개정이며,

○ 제8조제3항의 수입증지를 수입으로 개정하는 것은 도로점용허가시 징수하는 수수료 가 고액인 경우 별도 수입증지를 인쇄해야 하므로 이에 따른 시간과 예산 낭비의 요소가 있는 바, 고액인 경우는 고지에 의한 현금으로 징수하고 소액인 경우만 수입증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양면 징수방법을 설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됨

○ 별표1의 비고 6항은 통신, 전기를 점용물에 추가하는 것이며,

○ 별표1의 비고 6의 2의 신설은 도로법 제43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26조의2제1항 비고 6의 2중에서 전기관, 전기통신관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점용료 산정방법을 변경하는 것으로 상세한 내용은 별첨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점용료 산정방법 개정시 상당액의 세입 결손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 별표 1의4 중 진입로 점용료 산정요율을 토지가격의 0.02%로 적용하던 것을 토지가격의 0.025%로 개정하는 것은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2 별표4 개정에 따른 개정으로 적법하며 세입 증대 효과가 있음

- 별표 1의 2중 기타에 포함되어 있던 어스 양카의 점용료는 연간 1㎡당 직경 규격에 따라 최저 1,300원에서 최고 26,600원을 적용하던 것을 별도로 분리해서 토지가격의 0.02%를 적용하는 도로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연간 상당액의 세입 증대 효과가 있음
-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4. 質疑 및 答辯 要指

(질의자: 나재암 위원)

- 수입증지를 수입으로 개정할때 고액과 소액의 구분은?
 - 최대금액은 과거기준으로 얼마나 됩니까?
- (답변자: 건설국장 오종석)
- 현재 1억에 대한 수입증지는 10만원인데 증지를 붙이는데 어려움이 있어 개정하려는 것이며 기준은 두지 못했음.
 - 한전에 있는데 11억원에 110만원을 붙입니다. 그리고 개인은 몇 만원 밖에 안됩니다.
 - 건축차량진입로 유입시 부과하는 것으로 작년엔 약 3억2천만원이었으므로 대비하면 약 200만원 증가 예상입니다.

5. 討論 要指(토론자 나재암 위원)

-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함.

6. 審査結果: 원안 가결

7. 少數意見의 要指: 없음

8. 其他 必要한 事項

(심사보고 참석위원)

이형술위원장, 김정대간사, 이병문위원, 현효선위원, 이만로위원, 나재암위원, 강대규위원, 김이환위원, 선상선위원

○議長 金憲中 李炯述 委員長!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議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議員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토론이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의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特別市鍾路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鍾路區廳長 提出)

3. 서울特別市鍾路區稅入徵收褒賞金支給條例改正條例(案)(鍾路區廳長 提出)

4. 서울特別市鍾路區住民登錄事務의洞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鍾路區廳長 提出)

5. 서울特別市鍾路區戶籍過怠料賦課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鍾路區廳長 提出)

(11時 09分)

○議長 金憲中 의사일정 제2항 서울特別市鍾路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의사일정 제3항 서울特別市鍾路區稅入徵收褒賞金支給條例改正條例(案), 의사일정 제4항 서울特別市鍾路區住民登錄事務의洞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의사일정 제5항 서울特別市鍾路區戶籍過怠料賦課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을 일괄 상정합니다.

市民行政委員會의 玄壽漢 委員長! 심사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市民行政委員會 委員長 玄壽漢 市民行政委員會 委員長 玄壽漢입니다.

존경하는 金憲中議長님, 洪承台副議長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 제2기 처음으로 열리는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진지하게 심사 처리하여 주신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과 종로구청 관계관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49회 임시회기 중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은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을 심사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번 지방세 비리사건의 보완 대책으로 지방세무행정 부정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부과업무와 징수업무를 완전히 분리하여 업

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조정하였으나 법인의 실시 및 부과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이 부과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직제개편 과정에서 세무관리과에 소속되어 이번에 부과과로 이관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등록 관련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이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내용으로 일선기관에서 업무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으며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종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 규모의 확대에 따라 체납액이 날로 증가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징수포상금지급도 상대적으로 증대되어 합리적이고 적절한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개정하며 징수와 숨은 세원발굴 등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일정률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 등 바람직한 개정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종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법원 규칙에 의해서 호적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호적법에서 정한 제신고를 해태하였을 때 부과하던 과태료가 해태기간, 학력, 생활정도, 해태지역을 기준으로 시행하던 것을 해태기간으로 단일화하여 객관성을 유지토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95. 7. 27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시 민 행 정 위 원 회

1. 審査經過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5년 7월 6일
종로구청장

나. 회부일자 : 1995년 7월 26일

다. 상정일자 : 제4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1995년 7월 26일)
상정·의결

2. 提案說明의 要指

(제안설명자 : 총무국장 홍기화)

가. 제안이유

- 지방세무 부정방지 종합대책과 관련하여 자치구의 세무업무를 과단위의 부과업무와 징수업무로 완전분리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개정코자 함.

나. 주요골자

- 세무관리과의 조사평가계를 부과과로 사무분장함.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指

(보고자 : 전문위원 장소수)

- 지방세 비리 방지대책과 관련하여 부과업무와 징수업무를 완전 분리하여 제도적 측면에서 이를 뒷받침하고자 함.
- 현재 부과와 징수업무를 겸하도록 되어 있는 조사평가계를 징수과인 세무관리과에서 부과과로 사무분장을 변경코자 하는 내용.
- 본 개정은 세금 비리척결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으로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규정하는 시장의 사전승인이 있는 사항으로 타당한 개정으로 사료됨.

○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02조(행정기구)
-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대한 규정 제10조제3항(기구설치 기준)

4. 質疑 및 答辯 要指

(질의자 : 천상욱 위원)

- 조사평가계를 부과과로 이전하는 조례개정은 자체 및 시 지침 중 어떤 것입니까?
- 보건소 기구·구조관계도 본조례에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답변자 : 총무국장 홍기화)

- 지난번에 조정시 세무관리과에 소속되어 문제점이 야기된 바, 사후 시 지침 차원에서 각구가 공통으로 조례개정하는 것입니다.
- 아직 예정이며, 기구개편 단계까지는 안되어 있습니다.

5. 討論 要指: 없음

6. 審査結果: 원안가결

7. 少數意見의 要指: 해당없음

8. 其他 必要한 事項

(심사보고 참석위원)

현수한위원장, 홍기서관사, 안철주위원
오금남위원, 천상욱위원, 심재득위원
정태순위원, 정창희위원, 박종식위원
박문배 위원

서울특별시종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95. 7. 27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시 민 행 정 위 원 회

1. 審査經過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1995년 7월 15일
종로구청장

나. 회부일자: 1995년 7월 18일

다. 상정일자: 제4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1995년 7월 26일)
상정·의결

2. 提案說明의 要指

(제안설명자: 재무국장 오병한)

가. 제안이유

○ 지방재정규모의 확대에 인하여 체납액이 상대적으로 증가되고 과년도 체납액 징수 및 징수포상금 지급규모도 크게 증가되어 이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불합리성을 해소하고 합리적이고 적절한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하여 포상금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과년도 미수액 징수에 직접 종사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으로 하고, 포상금 지급대상 공무원 및 특별공적의 범위를 정함.

○ 과년도 미수액 중 1년차의 미수액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을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로 조정하고,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을 건당 30만원 이하 1인당 월 100만원 이하로 하여 그 지급범위를 제한함.

○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금액을 1건당 3만원에서 10만원이상 3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

○ 포상금지급은 사전에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함.

○ 징수한 미수액이 환불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도록 함.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指

(보고자: 전문위원 장소수)

○ 지방재정 규모의 확대에 체납액이 날로 증가되어 징수포상금 지급이 상대적으로 증대되어 이를 조정하기 위한 전면개정

○ 체납 지방세 또는 사용료의 징수와 숨은 세원 발굴 등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시민 또는 공무원에게 일정률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내용에 대한 개정

○ 관련근거

- 세정 13415-439('95.6.15)

• 서울특별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
조례개정(안)준칙

4. 質疑 및 答辯 要指

(질의자: 정창희위원, 홍기서관사, 천상욱위원, 박문배위원)

○ 포상금 지급여부는?

○ 우리구에서는 고액체납이 많이 없는데 1/100 포상금 지급시 직원사기가 상실하는 데

○ 체납 추진 징수실적이 소관별로 여러 부서에서 관리하는데 종합 관리할 용의는?

○ '95년도 현재 체납액과 징수율은?

○ 공적심사위원회의 선출과정 여부는?

○ 제3조제4항의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는 무엇입니까?

○ 대수선도 취득세가 부과되는지?

○ 일반주민도 세수증대차원에서 신고시 포상금을 줄 수 있는지요?

(답변자: 재무국장 오병한)

○ '94년도 포상금으로 3,700만원 지급되었습니다.

○ 과거보다는 포상금이 적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 금년 전산시스템을 설치하면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현재 체납액은 22억 7백만원이며 징수는

매년 20% 정도입니다.

- 시행규칙 제정시 위원 의견 청취 후 시행하겠습니다.
- 제도개선시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상향조정한 것입니다.
- 취득세 부과기준에 부대시설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현재는 규정이 없으나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5. 討論 要指 : (토론자 현수한 위원)

-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함

6. 審査結果 : 원안가결

7. 少數意見의 要指 : 해당없음

8. 其他 必要한 事項

(심사보고 참석위원)

현수한위원장, 홍기서간사, 오금남위원
천상욱위원, 심재득위원, 안철주위원
정창희위원, 정태순위원, 박종식위원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원
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95. 7. 27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시 민 행 정 위 원 회

1. 審査經過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5년 7월 10일
종로구청장

나. 회부일자 : 1995년 7월 26일

다. 상정일자 : 제4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1995년 7월 26일)
상정·의결

2. 提案說明의 要指

(제안설명자 : 총무국장 홍기화)

가. 제안이유

- 구청장이 관장하고 있는 주민등록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동장에게 권한위임하여 주민의 편의도모와 현실에 맞는 신속한 사무처리를 위해 개정코자 함.

나. 주요골자

- 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 제2호제3호(법 제20조에 의한 과태료의·징수에 관한 사항) 삭제.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指

(보고자 : 전문위원 장소수)

- 주민등록관련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이 동장에게 권한위임
- 주민등록 관련업무 중에서 용지관리와 정보제공, 벌금 등(과태료는 금번 위임) 업무를 제외한 전 업무를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으로,
- 이는 업무의 신속성을 도모하고 일선기관의 주거관리업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바람직한 개정으로 사료됨.
- 관련근거
 - 주민등록법 제2조(사무의 관장)
 - 주민등록법 제20조(과태료)

4. 質疑 및 答辯 要指

(질의자 : 박문배 위원, 천상욱 위원, 심재득 위원)

- 1년동안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 실적은?
- 주민등록업무를 비롯한 각종 업무가 동장에게 위임되는데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지?
- 본 조례안이 통과하면 누구명으로 발부됩니까?

(답변자 : 총무국장 홍기화)

- 전년도 약 3천5백만원 정도입니다.
- 조례로 위임하게 되어 있으며 하부기관서 주민편의로 신속하게 처리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 동장 명의로 발부됩니다.

5. 討論 要指 : 없음

6. 審査結果 : 원안가결

7. 少數意見의 要指 : 해당없음

8. 其他 必要한 事項

(심사보고 참석위원)

현수한위원장, 홍기서간사, 안철주위원,
오금남위원, 천상욱위원, 심재득위원,
정태순위원, 정창희위원, 박종식위원,
박문배위원

서울특별시종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95. 7. 27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시 민 행 정 위 원 회

1. 審查經過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5년 7월 18일
종로구청장

나. 회부일자 : 1995년 7월 21일

다. 상정일자 : 제4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1995년 7월 26일)
상정·의결

2. 提案說明之 要指

(제안설명자 : 시민봉사실장 황의진)

가. 제한이유

- **호적법 시행규칙이 개정**(대법원 규칙 제 1369호 '95.6.5)되어 과태료 부과기준이 동규칙에 명시되었기에 서울특별시종로구 호적과태료부과징수소례를 개정코자 함.

나. 주요골자

- 과태료 부과시에는 해태기간, 학력, 생활 정도, 해태지역 등을 참작하여 부과토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된 호적법시행규칙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명시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 중 부과기준 및 해태이유서 첨부과관련 조항 삭제.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指

(보고자 : 전문위원 장소수)

- 호적법에서 정한 제신고를 해태하였을 경우 지금까지는 해태기간, 학력, 생활정도, 해태지역 등을 참작하여 과태료를 호적담당 공무원이 임의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구체적 기준을 정하여 객관성을 유지토록 개정.

- 과태료 부과기준을 새로이 정함.
- | | |
|---------|-------------------|
| 1월 미만 | 10,000원(법제130조위반) |
| 1월~3월미만 | 20,000원(") |
| 3월~6월미만 | 30,000원(") |
| 1월 미만 | 20,000원(법제131조위반) |
| 1월~3월미만 | 40,000원(") |
| 3월~6월미만 | 60,000원(") |

○ 관련근거

- 호적법 제2조(관장)
- 호적법 제130조(과태료)
- 호적법 제131조(과태료)
- 호적법 제6조(수수료의 귀속)

4. 質疑 및 答辯 要指

(질의자 : 박문배위원, 홍기서위원, 안철주위원, 정창희위원)

- 제2조에 면장이 관장하는데 구청장의 여부

는?

- 호적과태료 체납 건수는?
- 해태이전의 홍보방안은 없는지?
- 해태기간을 조정하는 방안은 없는지요?
(답변자: 시민봉사실장 황의진)
- 제5조에 보면 구청장이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89년도 이전 건이 1,267건입니다.
- 민과 관이 유기적으로 처리되기 위하여 전산화가 추진되어야 하며, 홍보방안에 대하여 연구하겠습니다.
- 법원규칙으로 정하여 있어 제도적으로 건의할 것인가 검토하겠습니다.

5. 討論 要指：(토론자 현수한위원)

-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함.

6. 審查結果：원안 가결

7. 少數意見의 要指: 해당없음

8. 其他 必要한 事項

(심사보고 참석위원)

현수한위원장, 홍기서간사, 안철주위원

오금남위원, 천상욱위원, 심재득위원

정태수위원, 정창희위원, 박종식위원

박문배위원

○議長 金憲中 玄壽漢 委員長!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중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議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
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議員 토론하시기 바랍니
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토론이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청정기구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은 시민행정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종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議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議員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토론이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議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議員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토론이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종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議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議員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토론이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丁昌熙議員 外 4人 發議)

7.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決算檢査委員選任·運營및實費辨償條例中改正條例(案)(安哲柱議員 外 4人 發議)

8.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議員의日費와旅費의支給에관한條例改正條例(案)(朴鍾植議員 外 4人 發議)

(11時 23分)

○議長 金憲中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 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 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運營委員會 羅在岩 委員長! 심사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運營委員會 委員長 羅在岩 運營委員長 羅在岩입니다.

존경하는 金憲中議長님, 洪承台副議長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심사보고에 앞서 희망찬 제2대 개원을 마치고 첫번째 실시하는 임시회에서 본 위원장이 보고를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다룬 안건은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 발의해 주신 丁昌熙議員, 安哲柱議員, 朴鍾植議員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조례 개정안을 심사해 주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49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2건을 심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

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丁昌熙議員 외 4인의 발의로 제출된 안건으로 창신동 인구수의 감소에 따라 현행 의원수가 두사람에서 한사람으로 변경되어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타구의 현황 및 관할지역구에 민의를 수렴하여 부의장도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의장도 상임위원이 될 수 있다”는 조례규정을 개정하는 안으로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결사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安哲柱議員 외 4인이 발의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결산검사 위원을 세사람으로 정하고 구 의원 1인이 대표 검사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朴鍾植議員 외 4인이 발의한 안건으로 1995년 7월 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에 의거 정한 범위 내에서 개정한 사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월액인 의정활동비 월 350,000원 신설과 종전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변경하는 안건으로 출석일수 개념을 회기 중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 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심의과정에서 우리 운영위원 여러분들의 신중한 그리고 상당한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마는 표결처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의과정에서 본 조례안을 보류하자는 소수의 의견이 있어 하루 연장까지 해가면서 이 안을 통과했다는 사실을 아울러 보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95. 7. 27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운 영 위 원 회

1. 審査經過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5년 7월 18일
정창희의원의 4인

나. 회부일자 : 1995년 7월 21일

다. 상정일자 : 제4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1995년 7월 25일) 상정
·의결

2. 提案說明의 要指

(제안설명자 : 정창희의원 외 4인)

가. 제안이유

- 상위법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구 2만미만 관할구역에서는 의원정수 1인으로 되어 있는 바, 우리구 창신2동의 주민인원 감소에 따라 현행인원수에서 2인이 1인으로 변경되어 자체조례개정이 필요하므로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위원회조례 중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의정활동의 원활을 기하고자 제출하게 된 것임.

나. 주요골자

- 상임위원이 될 수 있는 범위를 부의장으로 확대함.(안 제4조제2항)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指

(보고자 : 전문위원 장소수)

- 의원 정수가 1인 감소됨에 따른 위원회 위원수 조정사항으로,
- 조정방법은 제2조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개정하는 방법과
- 제2조 상임위원회 위원정수는 개정치 않고 지금까지 상임위원회에 배정되지 않았던 부의장을 상임위원회에 배정하는 제4조 개정 등 2개 방법이 있는 바,
- 타구의 현황을 파악한 결과 24개 구청 중 6개구청 외에는 부의장이 상임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 부의장 위상이 의장이 궐위되지 않을 시에는 전혀 의정활동이 배제되는 맹점도 제기되므로
- 제4조 부의장 불참 규정을 개정하여 상임위원회에 참여토록 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관련근거
- 공직선거 및 부정방지법 제23조(자치구의 의원정수)

4. 質疑 및 答辯 要指

(질의자 : 이형술위원, 김이환위원)

○ 부의장의 상임위 활동을 정비하려는 법적 근거는?

○ 부의장의 역할과 1기에 개정안한 이유는?

(답변자 : 정창희 위원)

○ 현재 종로구의회위원회조례로 되어 있어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 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9조에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내용이 있으며, 의원의 단합, 화합, 기타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사료되어 그렇게 되었습니다.

5. 討論 要指(토론자 현수한위원)

○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함

6. 審査結果 : 원안가결

7. 少數意見의 要指 : 해당없음

8. 其他 必要한 事項

(심사보고 참석위원)

나재암위원장, 안철주간사, 이병문위원

현수한위원, 이형술위원, 정창희위원

박종식위원, 박문배위원, 김이환위원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결산검사위원회선임·운영및
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95. 7. 27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운 영 위 원 회

1. 審査經過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5년 7월 18일

안철주위원외 4인

나. 회부일자 : 1995년 7월 21일

다. 상정일자 : 제4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1995년 7월 25일) 상정
·의결

2. 提案說明의 要指

(제안설명자 : 정창희의원 외 4인)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시행령[‘94.7.6 대통령령 제 14317호]이 개정됨에 따라, 결산 검사위원선임의 위원수를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변경되어, 자체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므로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결산검사위원회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 중 제2조 및 제4조를 정비하여 의정활동의 원활을 기하고자 제출하게 된 것임.

나. 주요골자

○ 검사위원 중 의회위원의 수는 검사위원의 3분의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개정(안 제2조에 단서 신설)

○ 대표검사위원은 의원이 당연직으로 한다고 개정(안 제4조)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指

(보고자 : 전문위원 장소수)

[총 론]

○ 결산검사제도는 전년도 구청예산을 출납폐쇄 후(2월 28일) 3월 이내에 구청장이 결산하여 의회에 결산검사를 신청하면,

○ 의회에서는 의장이 결산검사위원 3인(의원 1인, 전문가 2인)을 선임하여 1개월 이내에 검사를 완료한 후 정기회에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케 되어 있는 제도로서,

○ 결산은 감사와는 달리 예산집행의 잘잘못을 평가하는 정치적 의미가 강하고 예산심사의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는 제도로서,

[결 론]

○ 본 개정(안)은 상위법(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개정에 따른 개정으로

○ 상위법 개정 취지는 검사위원의 수는 늘리고 이에 참여하는 의원 수를 1명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 이는 결산검사에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를 다수 참여시켜 결산검사의 전문성을 도모하자는 개정 취지로 이해가 되나,

○ 결산행정에 대한 의결권의 축소가 초래될 소지가 있어

○ 1994년 10월 제41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사안이나,

○ 결산검사 업무가 의회의 법정 업무이고 결산 시기도 법정사항이므로 급회 처리가 불가피한 사안으로 사료됨.

○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25조(결산)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결산위원 선임)

4. 質疑 및 答辯 要指

(질의자 : 이형술위원, 현수한위원)

○ 감사위원의 정수는 3인으로 하게 된 이유는?

○ 감사위원에게 지급되는 실비의 산정근거는?

(답변자: 안철주 위원)

○ 감사위원의 수는 상위법 근거에 의하여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 정수를 적정하게 조정 하였으며, 매년 의원 3인으로 실시하였습니다.

○ 의회결산감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에 근거하여 산정된 것임.

5. 討論 要指: 없음

6. 審査結果: 원안가결

7. 少數意見의 要指: 해당없음

8. 其他 必要한 事項

(심사보고 참석위원)

나재암위원장, 안철주간사, 이병문위원
현수한위원, 정창희위원, 박종식위원,
박문배위원, 김이환위원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
관한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95. 7. 27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운 영 위 원 회

1. 審査經過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1995년 7월 18일
박종식의원의 4인

나. 회부일자: 1995년 7월 21일

다. 상정일자: 제4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1995년 7월 25일) 상정
·의결

2. 提案說明의 要指

(제안설명자: 박종식의원 외 4인)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시행령[94.7.1 대통령령 제 14703호]이 개정됨에 따라, 의회위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액 지급과 회의수당, 여비등의 내용을 정비하여 일비와 여비조례를 전문개정하여 의회활동의 원활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의원의 의정활동비를 월정액으로 지급

○ 회의수당이란 용어신설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指

(보고자: 전문위원 장소수)

○ 회의수당 지급은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토록 규정된 상위령에 따라 개정한 바, 향후는 회기 결정시에 이를 참고한 의사일정 수립이 요구되며,

○ 관내여비 지급 문제는 내무부의 법개정의도는 폐지하는 것으로 이해되나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시 별표를 개정하지 않아 현재로서는 종전지급규정이 유효한 것으로 사료되며,

○ 소급 적용을 규정한 부칙은 이익을 해하지 않는 소급효 규정이므로 타당함.

○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32조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4. 質疑 및 答辯 要指

(질의자: 정창희위원, 박문배위원,
현수한위원)

○ 24개구 의회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 제1대 때에 의원 여비지급 내역은?

○ 반드시 회의장에 참석하여야 회의수당을 지급하는지?

(답변자: 박종식 위원)

○ 5개구는 원안통과 7개구는 보류중이며 12개구는 발의 예정입니다.

○ 국내여비기준표에 17,000원씩 지급되었습니다.

○ 회기 중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5. 討論 要指: 박문배위원-원안통과
현수한위원-보류

6. 審査結果: 원안가결

○ 원안통과 동의위원 5명, 보류 동의위원 2명, 기권 1명

7. 少數意見의 要指: 해당없음

8. 其他 必要한 事項

(심사보고 참석위원)

나재암위원장, 안철주간사, 이병문위원
현수한위원, 이형술위원, 정창희위원
박종식위원, 박문배위원, 김이환위원

○議長 金憲中 羅在岩 委員長!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議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議員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토론이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議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議員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토론이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위원의 일비와여비지급에 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議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議員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토론이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위원의일비와여비지급에 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 4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時 31分 閉會)

○出席議員 19名

安 哲 柱	李 炳 文	吳 錦 南
千 相 旭	玄 壽 漢	沈 載 得
鄭 泰 淳	李 炯 述	洪 承 台
羅 在 岩	丁 昌 熙	朴 鍾 植
朴 文 培	洪 起 瑞	康 來 奎
金 以 煥	金 憲 中	金 正 大
宣 相 善		